

공 시 송 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제130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20조 제1항 제1호, 제137조 제1항의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자에게 동법 제449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납부기한
(주)터보테크	214-81-59263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울금로 237-37	10만원	'15.11.20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통보

3. 서류의 내용 : (1)우리 위원회는 귀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조치하니 이를 이행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시 본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위원회가 귀사의 이의 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귀사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해당 이의 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3)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56-3314)로,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터보테크에 대한 조치(2015.9.23.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1부. 끝.

<붙임>

(주)터보테크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터보테크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제130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20조 제1항 제1호, 제137조 제1항의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의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36호에 의하여 과태료 100,000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주)터보테크[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대표이사 : 고성태, 박시철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59263
- 본점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237-37

□ 조치이유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50인 미만에게 청약권유하더라도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할 경우 소정의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모집으로 간주되고

과거 1년 동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모집한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 회사는 2014. 9. 3. 권면총액 7.3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매제한 조치없이 권면의 매수를 50매 이상인 73매로 발행하면서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